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 추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35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2
4. 검토의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 추가	3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 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 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 추가(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과 관련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
<u>7.</u>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부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¹⁾의 대안으로 도입된 기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음.

그런데 민간이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을 타 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자의 출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 재해 복구 및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통해 재해대책비, 재해보험 사업 등을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금 설치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1)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3) 검토의견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발의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어업 재해대책의 재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²⁾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 참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립 이후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출연 현황은 2,449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하여 10년간

2)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FTA)

1조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8년간(2017~2024) 30.6%를 조성하였음.

기금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393개 사업에 999억원을 집행(49%)하고,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관련 193개 사업에 410억원을 집행(20%)하는 등 누적 683개 사업에 1,615억원을 집행하였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 정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 (조성현황) '17년~'24.8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의 출연액은 61.0%,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38.7% 차지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6	30,494
2024.8	65	7,185	59	7,851	5	78	15,114
다년협약 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2	149,512	207	94,662	130	737	244,912

○ (기금사업 집행현황: 683개 사업, 1,615.4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4개 사업, 10,60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101개 사업, 36,181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393개 사업, 99,895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3개 사업, 41,047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5,139백만원)
- 홍보·공동사업 운용관리(1개 사업, 20백만원)

<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교육·장학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상품권		운용·관리		합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2017	2	500	2	192	3	344	2	501	-	-	-	-	9	1,537
2018	8	1,237	11	4,003	29	16,688	19	8,459	1	3	-	-	68	30,390
2019	12	1,292	21	2,921	36	10,014	16	3,360	2	359	-	-	87	17,946
2020	10	384	28	5,187	58	14,805	28	5,325	1	1,811	-	-	125	27,512
2021	15	1,644	31	6,227	76	12,591	33	4,646	2	3,807	-	-	157	28,915
2022	13	554	30	5,464	65	15,440	32	5,661	1	4,211	-	-	141	31,330
2023	22	4,265	46	6,027	60	15,375	41	8,562	1	3,252	1	20	171	37,501
2024.8	12	727	32	6,160	63	14,638	22	4,533	1	1,696	-	-	130	27,754
총계	94	10,603 (5.0%)	201	36,181 (18.0%)	393	99,895 (49.2%)	193	41,047 (20.4%)	9	15,139 (7.4%)	1	20 (0.0%)	891	208,885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024.8.2. 제출)

□ 현행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조성하고,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용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업 관련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물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민간이 출연한 자금을 타 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자의 출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농어촌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 분야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 면에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 신설은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재원과 용도의 연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문 의 처
02)6788-5414